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49033 저작권등록 말소 청구 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김제윤, 박선우

피 고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3. D 주식회사

4.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이지

담당변호사 정두리, 황희동

5. F

6. 사단법인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우홍균

변 론 종 결 2026. 6. 9.

판 결 선 고 2026. 8. 20.



주 문

1. 피고 F은 원고에게 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8.부터 2026. 8. 20.까지 연 5%, 2026.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5%는 피고 F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 F은 음악저작물(작품명: H, 작품코드: I)에 대한 신탁자관리 명부상 저작권등록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 및 2000. 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H'이라는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라 한다)의 작곡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중 15/52 지분을 상속한 사람이다.



나. 피고 사단법인 G(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이를 관리하고 그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분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 협회의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음악저작물은 1960년경 연주곡 형태로 공표되었다가, 이후 가창곡 형태로 피고 협회에 신탁되어 그 관리저작물로 등록되었다(저작물 코드: K).

라. 피고 F은 2000. 1.경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편곡하여 가수 L가 가창한 'H'이라는 리메이크곡(이하 '이 사건 리메이크곡'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2000. 4.경 위 편곡저작물을 피고 협회에 신고하여 그 관리저작물로 등록하였다(저작물 코드: D).

마. 이 사건 리메이크곡은 2000. 1. 8. L의 'M' 음반(이하 '이 사건 음반'이라 한다)에 수록되어 발매되었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는 이 사건 음반을 유통하였다.

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3. 6. 20.,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2014. 6. 13. 각 설립된 이후, 이 사건 음반을 유통하였다.

사. 피고 F은 이 사건 리메이크곡의 편곡자로서 2000. 12.경부터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 협회로부터 총 178,886원의 사용료를 분배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17, 21, 26, 29, 30, 34, 41, 42, 43, 46, 7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바 제1, 2, 3, 5,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F은 망인이 작곡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기초로 이 사건 리메이크곡을 작성하면서 원고 등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2차적저작물의 작성에 관한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협회에 이 사건 리메이크곡을 신고하여 그 관리저작물로 등록하였다. 이 사건 리메이크곡은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의거하여 그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피고 F이 이를 적법한 이용허락 없이 작성한 행위는 원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다.¹⁾

2) 피고 협회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신탁받지 아니하여 이를 이용허락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용허락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 F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이 사건 리메이크곡을 관리저작물로 등록하고 피고 F에게 편곡자 사용료를 분배하였으므로, 피고 F과 함께 원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피고 D 및 피고 E는 음반의 제작·발행·유통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피고 F이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적법한 이용허락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리메이크곡이 수록된 이 사건 음반을 제작·유통하였으므로 피고 F과 함께 원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

4) 따라서 피고 F은 이 사건 리메이크곡에 관한 피고 협회의 신탁자관리 명부상

1) 원고는 설령 이 사건 리메이크곡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F이 이를 2차적저작물로 신고·등록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음반의 제작·유통 등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들의 행위를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어떠한 명칭으로 신고·등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원저작물을 기초로 그와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는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즉, 이 사건 리메이크곡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작성·이용에 관하여 복제권 등 관련 저작재산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지언정, 피고 F이 이를 편곡저작물로 신고·등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저작권등록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일부 청구).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B 및 피고 D

피고 B는 2013. 6. 20. 설립되었고, 피고 D 역시 2014. 6. 13. 설립되었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리메이크곡이 최초로 작성된 2000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리메이크곡이 피고 협회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저작물이라는 점을 신뢰하여 이 사건 음반을 유통하였을 뿐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2) 피고 E

이 사건 리메이크곡은 원저작물인 이 사건 음악저작물과 별개의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지 아니하여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피고 협회에 신탁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신탁된 저작권을 피고 E를 상대로 직접 행사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E는 이 사건 음반의 제작사가 아니라 유통사에 불과하고, 유통계약 당시 제작사로부터 저작자에 대한 이용허락 및 사용료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으며, 피고 협회의 인지가 부착된 완제품을 납품받았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3) 피고 F

피고 F는 제작사로부터 이 사건 음반의 프로듀싱 의뢰를 받고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포함하여 제작사에서 선정한 10곡의 음악저작물을 리메이크하는 편곡을 하였고,



이 사건 리메이크곡을 피고 협회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하였다. 당시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곡들에 관하여 원저작자의 별도 승인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원저작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받는 것은 제작사의 역할이고, 당시 원저작자의 별도의 승인 없이 리메이크곡을 제작하고 이를 피고 협회에 등록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4) 피고 협회

가)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복제권은 피고 협회에 신탁되어 있는바, 이 사건 리메이크곡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단순한 복제물에 불과하다면 원고가 직접 위 복제권을 행사하여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흠결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본안전 항변).

나) 피고 협회는 음악저작물의 신고·등록 과정에서 신고된 저작물이 단순한 복제물인지 또는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고, 신고자가 제출한 내용에 따라 관리저작물로 등록하고 사용료를 분배하는 업무만을 수행한다. 즉, '편곡자'라는 표시는 사용료 정산·분배를 위한 내부 관리상의 표시에 불과하고, 그 표시 자체로 해당 음악저작물이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거나 확정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리메이크곡이 단순 복제물에 불과하다면 복제권은 피고 협회에 신탁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직접 행사할 수 없고, 반대로 2차적저작물이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피고 협회의 신탁관리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협회가 그 침해를 방지하거나 원저작자의 이용허락 여부를 심사할 의무도 없다.

3. 피고 협회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실제로 그 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본안 판단에 흡수된다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18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리메이크곡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 F 등이 원고의 허락 없이 이를 작성·이용함으로써 원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피고 협회에 신탁된 저작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관계 자체를 기준으로 할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리메이크곡이 실제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단순한 복제물에 불과한지, 아니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체법상의 문제로서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즉, 이 사건 리메이크곡이 단순한 복제물에 불과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사유가 될지언정,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를 각하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협회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음반의 제작·발행·유통 등에 관여하여 원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8호증의 기재 종합해 보면, 피고 C은 2006. 11. 15.에 설립된 악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서, 이 사건 리메이크곡이 작성되고 이 사건 음반이 발매된 이후에 설립되었고, 이 사건 리메이크곡 신고서에 이 사건 음반의 제작자로 기재된 'N'과 피고 C이 동일한 법적 주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 C이 이 사건 리메이크곡 또는 이 사건 음반의 제작·발행·유통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F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제5조 제2항).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리메이크곡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살펴건대, 이 사건 음악저작물과 이 사건 리메이크곡을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주된 선율이 이 사건 리메이크곡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한편, 이 사건 리메이크곡에는 위 선율을 기초로 새로운 부선율을 결합하는 등 원곡과 구별되는 음악적 표현이 부가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리메이크곡은 이 사건 음악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것으로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는 등 적법한 저작물 이용권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



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55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F은 이 사건 리메이크곡은 기획사로부터 편곡을 의뢰받아 작성한 것이고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이를 받는 것은 기획사의 역할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자신 또는 기획사가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이 사건 리메이크곡을 작성할 수 있는 적법한 이용허락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곡들에 관하여 원저작자의 별도 승인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 F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자인 원고 등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리메이크곡을 작성한 것은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리메이크곡의 저작권등록 말소 청구에 관한 판단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제2항).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F이 피고 협회의 신탁자 관리자료에 이 사건 리메이크곡의 편곡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 자체가 원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계속하여 침해하는 행위라거나, 이 사건 리메이크곡의 등록 말소가 위 권리의 침해를 정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리메이크곡에 관하여 피고 협회의 신탁자 관리자료상 저작권등록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



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가) 피고 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은 '관리저작물'을 관계권리자가 피고 협회에 신고하여 등록된 저작물로, '저작물자료'를 작품신고, 편곡신고 등에 따라 저작물의 관계권리자와 분배율을 기재한 자료로 각 정하고 있고(동 규정 제2조 제2호, 제4호), '관계권리자'는 위 저작물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다(동 규정 제5조). 또한 편곡자는 해당 편곡이 사용된 경우에만 사용료의 분배대상이 된다(동 규정 제3조 제3항). 나아가 피고 협회의 「저작권신탁계약약관」은 위탁자의 의뢰에 따라 수탁자가 '주무관청에 신탁저작권에 관한 등록업무'를 하는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동 약관 제15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 협회가 위탁자의 신고를 받아 저작물을 관리저작물로 등록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등록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저작물의 신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계권리자와 사용료 분배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피고 협회 내부의 절차나 조치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F이 이 사건 리메이크곡의 편곡자로 피고 협회의 신탁자 관리자료에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피고 F에게 이전되거나 제한·소멸되는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 편곡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하고, 그 보호가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F이 원고 등의 이용허락 없이 이 사건 리메이크곡을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리메이크곡 중 피고 F이 새롭게 창작한 부분에 관한 저작권까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즉, 피고 F은 자신이 새롭게 창작한 부분에 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피고 협회와의 신탁관계 및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위 부분의 이용에 관한 사용료를 분배받을 수 있다.

다) 피고 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은 작곡자, 작사자 및 편곡자가 관계권리자인 경우 그 사용료를 각 5/12, 5/12 및 2/12의 비율로 분배하도록 정하고 있다(동 규정 제14조 제4호). 그러나 이는 해당 편곡저작물이 사용된 경우 그 편곡자를 별도의 사용료 분배대상자로 정하고 그 분배비율을 정한 것일 뿐, 원저작자에게 귀속된 저작재산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지분 2/12를 편곡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F이 이 사건 리메이크곡에 관하여 분배받은 저작물 사용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차적저작물인 이 사건 리메이크곡 중 자신이 새롭게 창작한 부분에 관하여 분배받은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용료의 분배를 원고에게 귀속될 사용료의 일부가 피고 F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라) 이 사건 리메이크곡이 피고 협회에 신고·등록될 당시 시행되던 1999. 1. 20. 개정 「저작권신탁계약약관」은 위탁자가 자신이 위탁한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보증하도록 하고, 피고 협회는 필요한 경우 위탁자에게 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동 약관 제5조 제1, 2항). 한편, 원저작물을 편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로 등록하려는 경우 원저작권자의 승인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한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항은 이 사건 리메이크곡의 등록 이후인 2004. 3. 24. 제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리메이크곡은 위와 같은 승인서 제출규정을 위반하여 그 등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마) 현행 「저작권신탁계약약관」 역시 저작권 침해에 관한 민·형사상의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 협회가 사용료의 징수 또는 분배를 유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원저작자가 편곡자와 피고 협회 사이의 신탁관계에 기초한 관리저작물 등록 자체의 말소를 편곡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볼만한 근거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동약관 제18조 제2호).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저작재산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5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F은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적법한 이용권원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리메이크곡을 작성함으로써 원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제작사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리메이크곡을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원저작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받는 것은 제작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였고, 당시 원저작자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리메이크곡을 제작하여 피고 협회에 등록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는 취지로 그 저작권 침해행위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 F은 타인의 저작물인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여 이 사건 리메이크곡을 직접 작성한 사람으로서 그 작성에 필요한 이용허락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당시 피고 F이 제작사에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 여부를 확인하였다거나 제작사로부터 적법한 이용허락에 관한 고지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 F이 주장하는



관행이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F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F이, ① 이 사건 리메이크곡의 편곡자로서 피고 협회로부터 저작물 사용료를 분배받았고, ② 이 사건 리메이크곡을 작성하면서 제작자로부터 편곡대가 내지 용역비를 지급받았으며, ③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2차적저작물작성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였어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각 금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피고 F이 수령한 분배금 및 편곡대가 내지 용역비가 1,000,000원 이상이고, 2차적저작물작성에 관한 이용허락 대가는 다른 음악저작물의 이용승인 사례 등에 비추어 적어도 5,000,000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합계 6,000,000원 이상의 손해 중 일부로서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저작권법 제125조의 적용 여부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이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되고(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

먼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F이 이 사건 리메이크



곡의 편곡자로서 피고 협회로부터 총 178,886원의 저작물 사용료를 분배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사용료는 피고 협회의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피고 F이 이 사건 리메이크곡 중 자신이 새롭게 창작한 부분에 관하여 편곡자로서 분배받은 것이므로, 이를 피고 F이 원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F이 이 사건 리메이크곡을 작성하면서 제작자로부터 편곡 대가 내지 용역비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 F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나 그 지급 명목 및 그 중 이 사건 리메이크곡의 작성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 F이 이 사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의 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망인의 다른 음악저작물이 영상물 또는 영화 등에서 이용되어 10,000,000원, 30,000,000원 및 8,000,000원의 이용대가가 정하여진 사례를 들면서(갑 제70, 71, 72호증),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의 이용허락 대가 역시 적어도 5,00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사례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과 다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용매체, 이용범위, 이용기간 및 이용형태가 이 사건과 서로 다르고, 특히 영상물 또는 영화 등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와 원저작물을 편곡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이용대가가 동일하거나 이에 준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리메이크곡이 작성된 2000년경 이 사건 음악저작물 또는 이와 유사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2차적저작물작성의 허락 대가로 통상 지급되던 금액이나 그 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3)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

이 사건은 피고 F의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F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리메이크곡을 직접 작성한 점, ② 이 사건 음반은 2010. 9. 14. 및 2011. 4. 12. 피고 협회로부터 각 1,000장의 판매용 CD 복제가 승인되는 등 이 사건 리메이크곡이 수록된 이 사건 음반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기도 한 점, ③ 다만, 피고 F이 이 사건 리메이크곡의 작성 또는 이 사건 음반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④ 피고 F이 이 사건 리메이크곡의 편곡자로서 피고 협회로부터 분배받은 저작물 사용료는 총 178,886원인 점, ⑤ 다만, 위 사용료는 피고 F이 새롭게 창작한 편곡 부분에 관하여 분배받은 것으로서 이를 원고의 손해액으로 그대로 평가할 수는 없고, 원고도 작곡자 몫의 저작물 사용료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로 분배받은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망인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단독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라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 15/52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 사건 침해행위의 경위와 내용 및 결



과,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F의 이 사건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F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이 사건 음반이 발매된 2000. 1. 8.부터 피고 F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8. 2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인 2026.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거나 피고 F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1) 이 사건 리메이크곡은 2000. 1.경 피고 F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이 사건 음반 역시 그 무렵 발매되었다. 그런데 피고 B는 2013. 6. 20., 피고 D는 2014. 6. 13. 각 설립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이 피고 F의 이 사건 리메이크곡 작성이나 이 사건 음반의 최초 제작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B, 피고 D 및 피고 E는 이 사건 리메이크곡의 작성에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작성된 이 사건 리메이크곡이 수록된 이 사건 음반을 유통한 회사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리메이크곡은 2000. 4.경부터 피고 협회의 관리저작물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저작물 사용료의 분배도 이루어져 왔는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음반을 유통할 당시 피고 F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2차적저작물작성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피고 협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협회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직접 침해하였다거나 피고 F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협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협회의 원고에 대한 주된 의무는 「저작권신탁계약약관」과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 등에 따라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 신탁계약의 관리범위에 속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는 경우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분배하는 데 있고,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위 신탁계약의 관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협회가 그 관리범위를 넘어 개별 편곡저작물의 신고가 있을 때마다 원저작자의 이용허락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를 방지할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리메이크곡이 피고 협회에 신고·등록될 당시 시행되던 1999. 1. 20. 개정 「저작권신탁계약약관」은 위탁자가 자신이 위탁한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보증하도록 하고, 피고 협회는 필요한 경우 위탁자에게 그 확인·보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동 약관 제5조 제1, 2항). 위 규정의 문언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탁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확인·보증의무는 위탁자에게 있고, 피고 협회가 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그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약관만으로 피고 협회가 모든 편곡저작물의 신고·등록에 관하여 원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여부를 별도로 조사·확인할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원저작물을 편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 2차적 음악저작물로 등록하려는 경우 원저작권자의 승인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한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항은 이 사건 리메이크곡이 등록된 후인 2004. 3. 24. 비로소 제정되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이 사건 리메이크곡의 등록 당시에도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협회가 원저작자의 승인서 등 첨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당시 피고 협회에게 원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여부나 승인서의 존재를 확인하여야 할 구체적인 계약상 또는 규정상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4) 또한 앞서 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협회가 위탁자의 신고에 따라 이 사건 리메이크곡을 관리저작물로 등록한 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등록과는 구별되는 신탁관리업무상의 조치에 불과하고, 그 등록 자체로 원고의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피고 F에게 이전되거나 제한되는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새롭게 창작된 부분에 관하여는 독자적인 저작권이 발생하므로, 피고 F은 자신이 창작한 편곡 부분에 관한 별도의 저작권에 근거하여 피고 협회의 분배규정에 따라 그 부분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분배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 F이 원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



사건 리메이크곡을 작성함으로써 원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행위와 피고 협회가 이 사건 리메이크곡을 신탁관리하고 그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분배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구별되어야 하고, 피고 F의 위 침해행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협회의 관리자저작물 등록 또는 사용료 분배행위까지 당연히 원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 협회가 피고 F에게 분배한 사용료 역시 피고 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이 사건 리메이크곡 중 피고 F이 편곡자로서 새롭게 창작한 부분에 관하여 분배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사용료를 피고 F에게 잘못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위 분배규정은 편곡자를 별도의 관계권리자 및 사용료 분배대상으로 정하여 그 분배비율을 정한 것일 뿐, 원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나 사용료에 관한 권리의 일부가 편곡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그 사용료의 분배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F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 및 이 사건 리메이크곡에 관한 등록 말소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10

판사 이상수

판사 임성현



별지

관련 규정

1. 피고 협회의 저작권신탁계약약관

가. 1973. 3. 7. 제정된 것

제2조(신탁재산)

갑은 갑이 소유하는 모든 음악적저작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을에게 관리를 위탁하며 을은 저작권의 관리에 의해 얻은 저작물 사용료를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저작권의 관리범위)

저작권의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제1차적 사용은 갑의 의사를 따른다.

1. 연주 및 상연 또는 가창
2. 방송(라디오 및 텔레비전)
3. 영화화 및 상연
4. 출판
5. 음반, 녹음, 녹화 필름 테이프 등의 이차적사용, 각종 음반테이프의 복제사용
6. 기타 이용방법

나. 1999. 1. 20. 개정된 것

제5조(저작권의 확인 보증)

-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 보증한다.
- ② 수탁자는 전항의 확인 보증한 저작물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위탁자에게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2017. 4. 13. 개정된 것

제3조(저작권재산권의 신탁)

- ① 위탁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을 본 계약기간 중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저작권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신탁저작권을 관리하



여 이로 인하여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등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④ 제1항에 의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저작물에 대하여 위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이용허락 및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제6조(저작권의 관리범위)

수탁자는 위탁된 저작권(이하 '신탁저작권'이라 한다)을 다음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

1. 공연권
2.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3. 복제권(녹음, 녹화 및 악보출판 등)
4. 배포권
5. 대여권
6. 교과용도서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
7. 기타 저작권법상의 관리범위

제9조(저작물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수탁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및 분배규정에 의하여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여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제13조(소권)

위탁자는 신탁 저작권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하여 합의 또는 취하 등을 할 수 없다.

제15조(저작권 등록 및 등록경비)

- ① 다음 각 호의 수속경비는 해당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위탁자의 의뢰로 수탁자가 주무관청에 신탁저작권에 관한 등록업무를 하였을 경우
 2. 신탁계약의 종료업무 수속을 하였을 경우
- ② 전항의 경비는 신탁저작권의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 징수 및 분배 유보)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징수 또는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2.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민·형사의 소 제기를 한 경우

제19조(신탁계약의 승계)

- ①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법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



립된 법인은 본 신탁계약에 의거 위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2.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1988. 2. 23. 제정, 2019. 9. 20. 개정된 것)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G가 신탁받은 음악저작물을 관리하여 얻어진 대가로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의 분배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계권리자 : 한 저작물에 관계되는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역사자(이들의 저작재산권의 승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음악출판자를 말한다.
2. 저작물자료 : 작품신고, 편곡신고, 역사신고 기타 이에 준하는 저작물의 관계권리자, 분배율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4. 관리저작물 : 관계권리자가 본 협회에 신고하여 등록된 저작물을 말하며,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한 단체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포함한다.

제3조(분배대상자)

- ① 사용된 관리저작물의 관계권리자는 해당 사용료의 분배대상이 된다.
- ③ 편곡자 또는 역사자는 해당 편곡 또는 역사가 사용되었을 경우에만 분배대상이 된다.

제5조(관계권리자의 확정방법 등)

관계권리자는 저작물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확정한다.

제14조(분배율)

저작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관계권리자에게 분배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다. 다만, 관계권리자 간 분배비율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분배한다.

4. 작곡자 5/12, 작사자 5/12, 편곡자 2/12

3.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2004. 3. 24. 제정, 2024. 1. 29. 개정된 것)

제4조(저작물 등록 서류 제출)

- ① 위탁자는 협회에서 정한 저작물신고서에 기재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본인의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써 음반, 도서, 음원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증빙자료에서 본인의 저작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단, 신보음반 출시와 관련된 증빙자료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음악저작물을 역사, 편곡 등의 방법으로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음악 저작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원 저작권자(작사자, 작곡자)의 승인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